



제 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연 입장권 암표 금지·제재 규정 보완 등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94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공연 암표판매 금지행위 유형 세분화(안 제4조의2)	4
2.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12
3. 입장권등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세분화 및 몰수·추징 근거 신설 (안 제40조 등)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준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6.

다. 회 부 일 :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공연을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의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는 경

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유형을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

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공연마다 다르다는 점과 공연 입장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의2 신설).

라.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호, 안 제41조의2 신설).

마.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연 압표판매 금지행위 유형 세분화(안 제4조의2)

가. 개정안 요지

- 공연 입장권등의 판매자 및 위탁 판매자의 동의 없는 입장권등의 구매방해·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함.
- 구매방해: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4조의2제1호 신설).
- 부정구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의2제2호 신설).
-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의2제3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 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 선하는 행위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¹⁾ 제4조의2제1항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동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보안 조치를 우회한 사전 접속 등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어 현행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²⁾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연에 따라 할인 적용 수단이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어 실제 구입 가격이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판매 단속·제재 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암표와 관련된 금지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암표와 관련된 구매방해, 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의 기준을 “정가 초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암표와 관련된 금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8월 26일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의결하면서 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의 전면 금지, ②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③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판매 정가’로 개선, ④ 암표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한 바 있음.

○ 입장권등 부정판매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³⁾ 등 압표 거래 수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부정판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압표 신고게시판의 신고건수가 2020년 359건에서 2023년 2,16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⁴⁾하였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과 같이 압표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에서의 압표 거래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압표 거래까지 「공연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 「경범죄 처벌법」과 「공연법」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압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⁵⁾에 근거

3) 대리 티켓팅이란 압표 거래 업체가 구매자의 아이디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아 구매자의 계정으로 직접 예매를 해주는 방식이고, 아이디 옮기기란 이미 압표 거래 업체가 확보한 입장권 등을 취소함과 동시에 구매자의 계정으로 예매하는 방식을 의미함.

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압표 신고게시판은 신고된 압표 의심 사례를 티켓 예매처에 송부하여 소명요청 및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압표 신고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8.
신고건수	359건	785건	4,224건	2,161건	1,364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공연법」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압표 거래에 대해서만 그 수단과 관계 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압표 거래를 분리하여 규정하거나, 또는 온·오프라인에서의 압표 거래 행위를 포괄하여 「공연법」에서 금지하도록 하고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거나,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압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검토⁶⁾하여야 할 것으로 봄.

○ 둘째, 안 제4조의2는 압표 판매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① 구매 방해(제1호), ② 부정판매 목적 구매(제2호), ③ 부정판매(제3호)로 구별하고 있는데, 금지행위의 유형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의2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부정한 방법’이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2호의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 역시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4. (압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6) 현행 「경범죄 처벌법」이 1983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통신망이 보편화된 이후에도 개정이 되지 않아 온라인에서의 압표 매매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관련하여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압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려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10호)이 제안되었음.

있고, 부정하게 구매한 압표를 정가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제3호의 부정판매 행위 역시 궁극적으로 타인의 공정한 입장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넓게 포괄될 수 있는바, 안 제4조의2의 각 금지행위가 실질적으로 구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압표 행위의 기준을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압표 판매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압표를 근절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오프라인 부정판매는 「경범죄 처벌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부정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금지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안 제4조의2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구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참고로,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압표 매매를 금지하고 벌칙 수준을 강화하는 동법 개정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음.

- 또한, 동법 외에도 압표의 제재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프로스포츠 경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스포츠 경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상영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 법률안이 제안되었음.

[암표 매매 관련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명	제안자	주요 내용	제안일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u>공연 입장권</u>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2024.8.19.
	조계원의원 등 13인		2024.10.7.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4.10.11.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12.10.
	강유정의원 등 10인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2024.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u>운동경기 입장권</u>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2024.8.19.
	조계원의원 등 13인		2024.10.7.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8.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4.10.11.
	김준혁의원 등 10인		2024.11.6.
	강유정의원 등 10인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2024.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 무관 <u>영화 입장권·관람권</u> 등 부정판매 금지 등	2024.1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u>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u> 등 암표판매 금지 등	2024.10.18.
	김준혁의원 등 11인		2024.11.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온·오프라인 불문 암표매매 행위 처벌	2024.9.27.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21.
	조인철의원 등 12인		2024.12.1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기차 승차권 등의 암표 판매 금지 등	2024.11.6.
	이연희의원 등 19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차 승차권 구매 금지	2024.1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 금지	2024.12.10.

2.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판매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4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공연 입장권등에 대한 암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암표에 대한 단속·적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고포상금을 활용하여 암표 신고를 장려하고 암표를 근절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포상금 지급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포상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의2(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u>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u>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u>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u>
약사법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4 및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3. 입장권등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세분화 및 몰수·추징 근거 신설 (안 제40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처벌을 3단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제1호 신설).
- 입장권등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1조제1호)
- 구매 방해 행위, 압표 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 방해 행위 및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해 판매 정가 5배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재물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7. ----- 제40조제2호·제3호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 ----- ----- -----.
<신설>	1.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1. ~ 6. (생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u><신설></u>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2호·제6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 ----- ----- -----. 1.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2. ~ 6.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몰수·추징) ①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제1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42조(양벌규정) ----- ----- ----- ----- - 제40조(제1호는 제외한다) - ----- ----- ----- -----.
---	---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신설>	1.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신설>	2.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1. ~ 4. (생략)	3. ~ 7.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⁷⁾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7)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100만원 이상의 고가로 암표가 거래되어 암표 판매로 얻는 이득액의 규모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⁸⁾ 거래액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기존의 벌칙 규정이 암표 거래로 얻는 이득에 비해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부정판매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서 벌칙을 3단계로 구분하면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장권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유사하게 이득액을 기준으로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한 동법 개정안⁹⁾에 대하여 법무부가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법정형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김주원 기자, “‘임영웅·아이유 티켓 팔아요’...암표 사기로 6억원 챙긴 30대 실형’, 매일신문, 2024.1.16.,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11619054749618>

이유진 기자, ‘변우석 표 30배 폭리, 뮤지컬 암표로 1억 수익...‘티켓 되팔이’들 무더기 검거’, 한국일보, 2024.10.1.<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112360003820?did=NA>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42호

○ 문화체육관광부는 압표 제재 강화를 위한 벌칙 수준 상향 및 몰수·추징 근거 마련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나, 압표 판매 행위의 이득액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를 달리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벌칙 수준을 일괄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찰청은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제2조제1호나목 별표에 동 위반 행위를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¹¹⁾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9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11) 문화체육관광부 의견과 같이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반영될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게 됨.